

## 02

## 정정·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알 권리적 접근과 개선방안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 1. 액세스권으로서의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 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결정이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그리스 광장에 모여 토론을 했고, 근대 골목 길거리에는 대자보가 붙여지고 읽혀졌을 것이며, 요즘의 청년들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댓글을 단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통의 창구가 달라졌을 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원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중략)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한편 전통적으로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권을 구할 권리’(위 88헌마22결정)였다. 대체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일종의 한 배를 탄 관계였다. 언론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공익보도로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사에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카드는 그들이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한방이었다.

#### 나. 매스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 이용권, 액세스권

그러나 언론의 기업화로 언론 독과점 현상이 생기면서, 언론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제4의 권력을 얻게 되었다. 언론은 실질적으로 여론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Barron은 1967년에 ‘매스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 및 이용권, 즉 액세스

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sup>1)</sup>

Barron은 언론매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공론장을 제공할 책임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는 이러한 공론장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 공평한 접근이 허락되는 액세스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 액세스권의 대표적인 형태 : 정정·반론보도청구권

액세스권의 가장 대표적인 보장 형태는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이하 '반론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서 반론권 등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 등에게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 등은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구제와 함께 올바른 여론형성도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의 의의에 대하여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결정).

언론보도의 피해는 대체로 보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크든 작든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보도의 파장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정신적인 피해 또는 도덕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리라는 예상은 합리적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만약 ‘여당 정치인이 몰래 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사로 야기된 부정적인 감정이 보도된 정치인 1인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지 않고, 여당 지지율, 더 포괄적으로는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는 현상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편파적이거나 틀린 보도를 한 언론은 이후 제대로 된 사실을 영향력 있게 재보도해서 여론형성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김현귀 (2012).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p.226.

#### 라. 반론권이 잘 작동되는 언론 환경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한편 언론보도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영향력은 현대 미디어 사회의 공통된 큰 고민이다. 2021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이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 남용과 언론보도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들 개정안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본회의에 상정 철회됐다.<sup>2)</sup>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커다란 주제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개정안 내용들에 아쉬움이 남았다. 사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열람차단 외에도 반론권 등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고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

손해배상액수를 늘린다든가 기사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법이기도 하지만(심각한 사생활 침해 상황에서는 강력한 구제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이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의 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법원도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기사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7가합2014 판결 [정·손해배상]), 이는 정정·반론보도로 구제될 수 있는 사안은 기사삭제보다는 정정·반론보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언론매체에서 반론권이 잘 작동되는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유연하고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매체 변화를 살피고, 이러한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기존의 반론권이 갖는 취약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론권 등의 개선안 탐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1122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건의 기존 법률안에 대하여 제390회 국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2. 변화된 언론환경 에서의 기존 반론 권의 취약점

### 가. 인터넷 기반 매체로의 변화

전통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1996년에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은 69.3%이었고, 종이신문 열독률(지난 1주일 간 종이신문을 통해 신문을 읽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85.2%에 이르렀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져 2021년의 정기구독률은 4.8%, 열독률은 8.9%로 급감했다.<sup>3)</sup>

대표적인 전통매체 중 하나인 텔레비전의 영향력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전만 못한 모습이다. 텔레비전을 뉴스 등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로 택한 20대는 9%, 30대는 22.4% 밖에 되지 않았다(하지만 50-60대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택한 비율이 각 69.7%,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는 한다).<sup>4)</sup> 젊은 층에서의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므로, 언론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중요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점점 더 방송 기사는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유튜브나 포털 등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언론환경 변화의 추이는 언론조정사건에서의 피신청인 매체 유형

을 봐도 잘 드러난다. 2021년도 언론조정사건을 피신청인 매체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건이 57.9%,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신청한 사건이 14.2%였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비중이 70%를 넘는 것이다.<sup>5)</sup>

### 나. 인터넷 기반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문 예시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언론 환경에서 정정·반론보도 형식이 효과적인지 살피기 위해,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에 실린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조정 문안을 살펴보았다. 방송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정·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되고,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식은 아래와 동일하였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OO섹션(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OO시간 동안 OO섹션 기사목록(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즉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을 원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일정 시간 동안 게재하고, 원 기사 하단에도 정정(반론)보도문을 붙이는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이 사항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

3) 정기구독률과 열독률의 수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 한국언론연감>의 p.12, <2021 한국언론연감>의 p.260을 참조.

4)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한국언론연감>, p.255.

5) 언론중재위원회 (2021),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p.24.

었다. 이는 ‘사실공포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 반론보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에 충실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의하더라도, 2021년도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1,549건 가운데,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또는 프로그램에 게재, 방송된 사례는 91.9%(1,424건)를 차지한다고 하여, 피해구제보도문을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채널에 게재, 방송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취지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sup>6)</sup>

#### 다. 구체적인 조정 사례로 살핀 현재 반론보도 형식의 약점<sup>7)</sup>

그러나 아래 사례를 보면 현재의 반론권 보도 형식이 잘못 형성된 여론을 수정,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생각해볼게 된다.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멍이 든 흔적, 어린이집 CCTV, 다른 아이들의 이상 행동 등에 비추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신청이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CCTV 영상에서 학대 증거는 찾을 수 없음에도, 어린이집 학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아동학대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론을 보도하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부제소 조항을 조정해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동일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 심리 전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방송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약속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해당 원 보도는 2021. 6. 8., 반론보도는 같은 해 6. 28., 추후보도는 2022. 2. 23. 이루어졌다. 원 보도와 동일섹션에서 신속하게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언론사의 조치는 현행법 및 실무기준에 비추어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론 측면에서 원 보도와 반론보도가 시민들에게 동일한 전파 효과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 원 보도는 전파력이 높았던 반면에, 반론보도는 전파력도 낮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이 추측된다.

원 보도는 네이버 인링크 기사에서 162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어린이집 학대 지겹다. 저런 선생깁지도 않은 것들 자꾸 선처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거다. 무책임한 사법부와 정부에 아이들만 피해본다.’ ‘또 OO. OO교육청 보육교사 감사를 안하는 겁니까?’ 등의 댓글이 달렸다.<sup>8)</sup> 해당 보도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 직업군, 해당 사건이 벌어진 관련 지자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반론보도와 심지어 무혐의처분을 받고 이루어진 추후보도에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 이것은 인링크, 아웃링크 기사 모두 마찬가지였다.<sup>9)</sup> 원 보도를 읽은 독자들 중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읽은 비중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의 반론보도 형식이 원 보도가 야기한 잘못된 여론형성을 수정하는 데 일조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던지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 라. 정정·반론보도문의 접근성 하락 문제

현재의 정정·반론보도문 형식은 여론을 환기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차적인 이유는 정정·반론보도문이 기존 기사 독자들에게

6) 언론중재위원회 (2021).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p.28.

7) 언론중재위원회 (2021). <2021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pp.67~69에서 보도내용, 신청이유, 조정결과를 인용 및 요약함.

8) 원 보도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88861?sid=102>

9) 반론보도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92216?sid=102>  
추후보도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29488?sid=102>



게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소비 이용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뉴스를 얻기 위한 매체를 하나만 택하라는 질문에서 인터넷 포털/검색엔진은 35.9%인 반면, 인터넷뉴스사이트는 1.4%밖에 되지 않았다.<sup>10)</sup> 구체적으로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털 첫 화면이나 뉴스홈 첫 화면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58.1%로 제일 많았고, 관심 분야/주제의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38.5%, 뉴스홈의 '많이 본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38%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는 비중은 18.6%, 미리 설정한 메뉴(MY뉴스, 구독 언론사 등)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비중은 17.7%로 낮은 편이었다.<sup>11)</sup>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읽기보다는 포털에서 포털이 배열한 뉴스를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이신문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포털이나 검색엔진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구독자(시청자)의 루틴한 언론소비 방식에서 '루틴'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조간신문을 기다리고 저녁에 저녁뉴스를 기다렸다. 이것은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정정·반론보도가 되면 원 보도를 봤던 구독자(시

청자)는 정정·반론보도문을 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언론 이용 상황에서는, 정정·반론보도가 되더라도, 원 대상보도를 봤던 기존 이용자들에게 정정·반론보도가 동일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많은 언론 이용자들이 포털 또는 검색엔진을 통해 기사를 소비하는 데다가, 그마저도 국내 포털에서는 대부분 인링크 방식(포털 안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 참고로 구글은 해당 뉴스 매체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함)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해당 뉴스 매체 사이트로 아예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 언론사 인터넷뉴스사이트에 정정·반론보도가 게재되어도, 뉴스 이용자들이 인터넷뉴스사이트를 통해 정정·반론보도문에 접근할 확률이 감소한다.

### 3. 현행 반론권의 개선안 검토

####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게 정정보도 등 섹션을 두고 관리하게 할 의무

##### (1) 현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포털의 한정적인 의무

현재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이들을 '언론등'으로 포함시켜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내 포털이 대부분 기사 작성에는 관여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털이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상대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듯하다.

이밖에 언론중재법이 포털,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의무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다(언론중재법 제17조의2). 그런데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상의 위 알림 의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 언론사가 조정이나 판결의 상대방으로서 정정·반론

1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한국언론연감>, p.255.

1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한국언론연감>, pp.270~272.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 실무에서는 원 언론사가 기사를 제공한 포털에 정정보도 등 사항을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경우에 정정·반론보도가 포털의 초기화면이나 뉴스면 등 포털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이용자의 검색으로만 노출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원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언론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포털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

그러나 변화된 언론환경에서 포털에게도 좀더 강화된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포털이 제휴 언론사의 오보를 자신의 포털 사이트에 게재한 사례<sup>12)</sup>에서 포털의 법적 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 법원은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인터넷포털 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 (3) 포털이 눈에 띄는 곳에 정정보도 등 섹션을 만드는 등 정정보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

포털에게 정정·반론보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섹션을 만들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에 부여된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알림 의무를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다.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의 상대

방 당사자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 한, 포털에서의 게재 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법률의 형태로 포털에 이러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2021년에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를 쉽게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5조 제7항)(의안번호 211222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인용된 경우 원 보도와 일치하는 구역 및 화면순서, 분량, 방법으로 기사를 매개’(안 제17조의2 제4항)하고, ‘위법한 기사 등을 제공이 아닌 매개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안 제17조의2 제5항)(김용민 의원안(의안번호11047))는 내용이 있었다.

참고로 현재 네이버 포털은 ‘정정보도 모음’이라는 섹션(섹션 내 하부 항목으로서 ‘고침·바로잡습니다/ 정정·반론·추후보도요청 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가 있음)을 두고 있기는 하다.<sup>13)</sup> 그런데 이 섹션의 큰 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위치시켜, 이용자가 이 섹션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게재 기사를 보건대, 조정,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정정·반론보도 기사를 모아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따라 알림 의무가 부과되는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섹션을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시켜, 정정·반론보도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시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관여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언론매체로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에게 전파 책임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정·반론보도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된 언론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반론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 나. 정정·반론보도 자체의 충실성을 높이는 방안

무엇보다 정정·반론보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정·반론보도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정·

12)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으로 잘못 작성한 언론사 기사를 네이버에서 기사 제목만 살짝 수정하여 포털 주요 뉴스 중 시사 분야란에 배치한 사례.

13) URL: <https://news.naver.com/main/ombudsman/errorArticleList.naver?mid=omb>



반론보도 자체로 ‘읽는(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반론권의 질적 향상은 언론이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의 장이 되는 데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미가 더욱 크다.

2020년,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충실한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한겨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現 대통령)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지만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는 2019. 10. 11.자 단독보도에 대하여, 2020. 5. 22. 자신들의 보도에 잘못과 과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하였는데, 원 보도가 무엇을 근거로 보도했고, 원 보도 중 어떤 내용이 틀렸고, 어떤 부분이 과장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의 원 보도 중 어떤 주장에 대한 입증 증거를 추후에도 보완하지 못했음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수준의 정정보도는 원 보도 이상의 가치를 지녔으며, 사안에 더욱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수준의 정정·반론보도가 많아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질적인 부분을 법률로서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정·반론문 등의 형식에 대한 입법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반론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개정안에는 ① 보도문의 ‘양’을 강조하는 내용(‘보도문의 시간, 분량, 크기를 원 보도와 같게 하되,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15조 제6항)), ② 보도문의 ‘기사제목’에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의4 제2항)(의안번호 2112222)), ③ 보도문의 ‘게재위치’를 강조하는 내용(방송이라면 프로그램 시작 시에, 인터넷신문이라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라는 내용(박광온 의원안, 의안번호 2103112)) 등이 있었다.

이들 개정안은 원 보도는 대서특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으로 게재되거나 해당 방송 종료 직전에 방송되어 독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기사나 방송의 제목만을 보고 판단하는 미디어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 4. 전파가능성과 공정한 여론형성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언론중재법 제15호 제6항), 법원은 원 보도와 반론보도 간에 전파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면, 반론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방송 순서가 아니라, 원래 보도된 방송 순서보다도 앞에 내야 한다고 선고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박물관장인 원고가 장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무능력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그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반론보도를 ‘C’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 2065044 판결 [손해배상(기)])

즉 정정·반론보도문의 실질적인 전파가능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정·반론보도 게재 형식 등 기본적인 틀은 인터넷 기반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서, 현재의 언론 이용 상황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완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반론보도를 통한 공정한 여론형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